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985호

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28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9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법률 개정에 따라 "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"과 "외국인환자 유치업 자"용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의제3호 및 제4호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21.1.1.)되어 "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"과 "외국인환자 유치업 자"의 등록 등 관리·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사무 가 이양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업무의 이관(안 제2조의 3호, 4호)

○ 동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임.

〈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(개정 2020.2.18.)〉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「의료법」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 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 였을 것
-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-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- 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- 관련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, 지역별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특색 에 맞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으로 이해됨.
-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 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붙임 1

집행부 검토의견

의안번호 985

서울특별시 의료관광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아이수루 의원	2023. 8. 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⟨개정 필요성⟩○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정비 필요		
	〈주요 입법 요지〉○ "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"과 "외국인환자 유치업자" 용어 정의 변경(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)		
추진경과	○ 2023. 8. 9. 의원 발의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O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해당 없음	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
담당부서	관광산업과 팀장	박정욱(☎ 2133-2781) 담	당 김선주(☎ 2133-2784)